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생활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 마련 등〉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21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및 생활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br>마련 ..... | 2  |
| 2. 국회보고 대상에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br>추가 .....  | 9  |
| <br>[참고자료 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 13 |
| [참고자료 2] 한부모 가족 통계 .....                          | 1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혁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 Ⅲ. 검토의견

####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및 생활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고,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생활여건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u>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u>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차등 지원) ① -----<br>-----<br>----- <u>해당하는 자로 한다.</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③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의 지급<sup>1)</sup>,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sup>2)</sup>과 자립지원<sup>3)</sup>,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입소<sup>4)</sup> 등의 지원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sup>5)</sup>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5. (생 략)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

제5호까지6)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7)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8), 기본적으로 한부모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

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  
 한다)의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  
·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  
 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sup>9)</sup>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5%인 가족을 복지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한부모,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sup>10)</sup>

이처럼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임신·출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임.

---

9)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6호, 2024. 12. 30.

10) [참고자료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 구 분      |                   | 한부모 연령                                    |                                                                    |                                                                      |
|----------|-------------------|-------------------------------------------|--------------------------------------------------------------------|----------------------------------------------------------------------|
|          |                   | 만 24세 이하<br>(청소년 한부모)                     | 만 25~34세<br>(청년 한부모)                                               | 만 35세 이상                                                             |
| 지원<br>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br>65%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
| 지원<br>내용 | 아동<br>양육비         | 자녀 1인당<br>월 37만원<br>* 단, 0~1세 자녀는<br>40만원 | 자녀 1인당<br>월 28~33만원<br>* 만 5세 이하 자녀 33만원,<br>만 6~18세 미만 자녀<br>28만원 | 자녀 1인당<br>월 23만원<br>* 만 5세 이하 자녀 양<br>육 미혼모·부 및 조손가<br>족의 경우 28만원 지원 |
|          | 초·중·고생 자녀<br>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
|          | 시설생계비<br>(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                                                                      |
|          | 검정고시<br>학습비       | 가구당<br>연 154만원 이내                         | -                                                                  | -                                                                    |
|          | 자립촉진 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                                                                  | -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생활여건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처한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별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한부모 가구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가구이며, 현행 법령상 지원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은 20만 5,000가구<sup>11)</sup>(자녀수 30만 5,000명)로 나타났는바,<sup>12)</sup>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한부모가구(35만가구)의 58.6%에 해당됨.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체 한부모가구 통계는 없어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한부모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추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한부모 가구 관련 통계 >

| 구 분                                        |     | 통계      | 비고                                       |
|--------------------------------------------|-----|---------|------------------------------------------|
| 19세 이상 자녀 양육<br>한부모가구                      | 가구수 | 114만가구  |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                       |
| 18세 이하 자녀 양육<br>한부모가구                      | 가구수 | 35만가구   |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                       |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br>저소득 한부모가족<br>* 청소년한부모 포함 | 가구수 | 20.5만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br>*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5.8) |
|                                            | 자녀수 | 30.5만명  |                                          |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현재에도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11)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이나, 63% 이상 65% 이하 가구수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는 미비하며,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12) [참고자료 2] 한부모 가구 통계

조손가족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가족구성원 현황에 따라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 중 한부모가족지원에 있어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부분에는 동의하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현행과 같이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국회보고 대상에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추가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제4항, 제5조의7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u>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u> | ④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제5조의7(국회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u> <u>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5조의5<sup>13)</sup>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5년마다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6<sup>14)</sup>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정책과 관련한 성평등가족부의 책임성 제고 및 국회의

---

13)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4)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제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보면, 「건강가정기본법」<sup>15)</sup> 및 「다문화가족지원법」<sup>16)</sup>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sup>17)</sup>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와 같이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시에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7)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국회 보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649 |
|--------------|

## 【참고자료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1)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li> <li>*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li> </ul>                        | 자녀 1인당<br>월 23만원  |
| 추가<br>아동양육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li> </ul>                                                       | 자녀 1인당<br>월 5만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li> </ul>                                                        | 자녀 1인당<br>월 10만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li> <li>*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li> </ul> | 자녀 1인당<br>월 5만원   |
| 아동교육<br>지원비<br>(학용품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li> </ul>                                                             | 자녀 1인당<br>연 9.3만원 |
| 생계비<br>(생활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li> </ul>                                                               | 가구당<br>월 5만원      |

##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br>월 37만원     |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br>월 40만원     |
| 아동교육<br>지원비<br>(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br>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br>연 9.3만원    |
| 생계비<br>(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br>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br>월 5만원         |
| 검정고시,<br>재학생 등<br>학습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br>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br>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 가구당<br>연 154만원<br>이내 |
| 자립촉진<br>수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br>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br>월 10만원        |

## 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의 위기임산부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 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에 입소 희망자

### 3. 참고사항

#### 1) 지원 기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가구원수        |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br>조손가족    | 기준 중위<br>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br>한부모<br>가족 | 기준 중위<br>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 기준 중위<br>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2)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 지원 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비</li> <li>• 추가 아동양육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조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li> <li>•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li> <li>•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교육지원비<br/>(학용품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li> <li>•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li> <li>•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li> </ul>    |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2】 한부모 가구 통계

### □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 출처 : 통계청, 2024 인구총조사, (단위: 천가구, %)

| 구분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전체 가구      |        | 20,500 | 20,891 | 21,485 | 22,023 | 22,383 | 22,728 | 22,997 |
| 일반 가구      |        | 19,979 | 20,343 | 20,927 | 21,448 | 21,774 | 22,073 | 22,294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 1,539  | 1,529  | 1,533  | 1,510  | 1,494  | 1,493  | 1,491  |
|            | 18세 이하 | 408    | 384    | 373    | 369    | 355    | 350    | 349    |
|            | 모자가족   | 270    | 257    | 251    | 250    | 242    | 240    | 241    |
|            | 부자가족   | 138    | 127    | 122    | 119    | 113    | 110    | 108    |
|            | 19세 이상 | 1,131  | 1,145  | 1,160  | 1,141  | 1,139  | 1,143  | 1,142  |
| 비율(한부모/전체) |        | 7.5    | 7.3    | 7.1    | 6.9    | 6.7    | 6.6    | 6.5    |

| 구분                    |     | 통계      | 비고                    |
|-----------------------|-----|---------|-----------------------|
| 19세 이상 자녀 양육<br>한부모가구 | 가구수 | 114만가구  |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    |
|                       | 가구수 | 35만가구   |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    |
|                       | 가구수 | 20.5만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18세 이하 자녀 양육<br>한부모가구 | 가구수 | 20.5만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 자녀수 | 30.5만명  | *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5.8)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출처 :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연도말 기준, 단위: 세대, 명)

| 구분     | 계       |         | 모자가족               |                    | 부자가족              |                   | 조손가족            |                 | 청소년 한부모         |                 |
|--------|---------|---------|--------------------|--------------------|-------------------|-------------------|-----------------|-----------------|-----------------|-----------------|
|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 '22    | 190,421 | 474,194 | 149,888<br>(78.7%) | 374,447<br>(79.0%) | 37,209<br>(19.5%) | 92,611<br>(19.5%) | 1,307<br>(0.7%) | 3,054<br>(0.6%) | 2,017<br>(1.1%) | 4,082<br>(0.9%) |
| '23    | 194,273 | 484,180 | 154,164<br>(79.4%) | 384,939<br>(79.5%) | 37,116<br>(19.1%) | 92,679<br>(19.1%) | 1,367<br>(0.7%) | 3,222<br>(0.7%) | 1,626<br>(0.8%) | 3,340<br>(0.7%) |
| '24    | 199,409 | 497,012 | 159,027<br>(79.7%) | 396,873<br>(79.9%) | 37,519<br>(18.8%) | 93,852<br>(18.9%) | 1,435<br>(0.7%) | 3,361<br>(0.7%) | 1,428<br>(0.7%) | 2,926<br>(0.6%) |
| '25.8. | 204,913 | 510,058 | 163,552<br>(79.8%) | 407,655<br>(79.9%) | 38,654<br>(18.9%) | 96,470<br>(18.9%) | 1,444<br>(0.7%) | 3,356<br>(0.7%) | 1,263<br>(0.6%) | 2,577<br>(0.5%) |